

2018년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

「YES FTA 컨설팅 사업」 대상기업 모집 공고

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 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2월 2일

서울세관장

1. 사업개요

- (사 업 명) 2018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
- (사업기간) 2018. 2월 ~ 11월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)
- (지원금액)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
 - 기업규모(매출액 기준)에 따라 차등 지원

구 분	적용기준	기업부담	비고
I 기업군	전년 매출액 20억 이하	전액 지원	
II 기업군	전년 매출액 50억 이하	지원금액의 10%	I 기업군제외
III 기업군	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	지원금액의 20%	I, II 기업군 제외
IV 기업군	전년 매출액 1,500억 이하	지원금액의 30%	I, II, III 기업군 제외
V 기업군	전년 매출액 1,500억 초과	지원금액의 40%	

- (신청자격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(예정) 및 내수기업

<다 음>

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*

*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

② 직전 2년간('16~'17년) 관세청·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

③ 최근 2년간(접수일 기준)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

2. 신청 및 접수

- 컨설팅 희망기업은 컨설팅사업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**서울세관에 E-mail 접수** (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☞ ftaseoul@customs.go.kr)

* (메일제목) 컨설팅사업 신청_기업명_컨설팅유형_희망세관

- 접수기간 : '18. 2. 5. ~ 2. 28.

<사업신청서 첨부서류>

- (i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(ii)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(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)
 - (iii) 정보 활용 동의서[붙임2-1]
 - (iv) 그 외 선정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
- B형 : 원산지증명서 or 원산지확인서, C형 : 내수기업의 경우 원산지확인서

-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유형(A·B·C) 선택

유형		선정 우선순위
A형	FTA 활용 종합	1순위 : 전년도 FTA 활용 실적*이 없는 수출(예정)기업 2순위 : 전년도 수출액이 미화 1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※ FTA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실익 등 FTA 활용 실익이 있는 기업일 것
B형	원산지검증 대응	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*이 있는 기업
C형	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	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) 미구축 기업

* 'FTA 활용 실적'은 원산지증명서(기관, 자율)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적을 의미함

- 공개된 FTA 컨설턴트 Pool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 선택
- *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세관은 업체 소재지, 컨설턴트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턴트를 해당기업에 배정
- ※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3. 선정 심사

- 사업세관은 신청서 접수마감일(E-mail 수신일)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기업 및 컨설턴트에 선정·배정 여부 통보
- 컨설턴트*는 최대 10개 기업**에 대해 컨설팅 가능하며, 공익

관세사로 활동하는 컨설턴트는 최대 5개 추가 가능

* 『컨설턴트 양성교육』 이수자 중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

** A·B·C형는 각각 1개로 산정

4. 컨설팅 시행

- (컨설팅 착수) 컨설턴트는 배정통보일로부터 10일 내에 사업세관에 착수 보고를 해야 하며, 이때 「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」 및 「보안각서」를 같이 제출함
 - 기한 내에 착수 보고가 없는 경우 즉시 배정 취소
- (컨설팅 시행) 컨설턴트는 컨설팅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고 세관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 -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감점
 - 컨설턴트는 1일 1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행 가능
 - A형의 경우 1단계 완료보고서 제출한 다음날부터 2단계(사후관리)가 시작됨(별도의 착수 보고 없음), 2단계 만료 후 10일내 완료보고서 제출

[컨설팅 유형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완료기한]

컨설팅 유형		지원내용 (예시)	완료기한
A형	FTA 활용 종합	▪ FTA-PASS 구축 및 시스템 활용 ☞ 재료명세서 작성 /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(구매처, 물품 재료, 거래명세서, 원가관리, 완제품 가격 등) /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/ 제조공정 확인 / 증빙자료 관리 등 ▪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☞ 서류작성 방법 설명, 신청절차 및 발급 ▪ 인증수출자 지정 및 사후관리 ☞ 인증수출자 요건, 절차, 신청, 갱신 및 사후관리 /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/ 운송 요건 충족여부 / C/O 관리대장, 전담자 지정 등 관리실태 진단 ▪ 원산지검증 대비 ☞ 원산지검증 절차 / 특혜관세 배제에 대한 이해 / 자료보관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	(1단계) 배정통보일로부터 40일내
			(2단계) 1단계 완료보고서 제출 다음날부터 60일
B형	원산지검증 대응	▪ 원산지검증 대비 ☞ 특정 건에 대한 모의검증 실시 / 관련 서류보관 및 검증대응 체계(시스템) 구축 등	배정통보일로부터 40일내
C형	원산지관리 시스템구축	▪ FTA-PASS 구축 및 시스템 활용 ☞ 재료명세서 작성 /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(구매처, 물품 재료, 거래명세서, 원가관리, 완제품 가격 등) /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/ 제조공정 확인 / 증빙자료 관리 등	

5.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

- 컨설팅 진행 중 또는 완료보고서 제출 후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애로 청취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실시
- 선정기업의 10%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컨설팅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
- ※ 모니터링 결과 컨설턴트의 허위 및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컨설팅사업 참여 배제 및 대금 지급률 조정
- ※ 세관직원이 현장모니터링을 위해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 기업과 컨설턴트는 적극 협조 바람

6. 컨설팅 평가 및 대금 지급

- (1차평가) 사업세관은 컨설팅 완료보고서,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기준*에 따라 평가
- * 사업환경(10점), 난이도(30점), 성과(40점), 만족도(20점)에 따라 차등 평가
- (최종평가) 'FTA 컨설팅 평가위원회'에서 평가

컨설팅 유형		평가기준
A 형	(1단계)	① 기업 규모(전년도 매출액 기준) ② 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(인증수출자 지정 여부) ③ FTA-PASS 입력되는 원재료 수 (BOM上 원재료 수) ④ FTA 활용도 (FTA-PASS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, 원산지 판적실적) ⑤ FTA 컨설팅 만족도 (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)
	(2단계)	FTA-PASS 활용한 원산지서류발급* 지원 건수(품목 수 기준) * C/O+원산지확인서+국내제조확인서
B 형	원산지검증 대응	① 기업 규모(전년도 매출액 기준) ② 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(인증수출자 지정 여부) ③ FTA-PASS 입력되는 원재료 수 (BOM上 원재료 수) ④ 모의검증 및 원산지 판정 실적 ⑤ FTA 컨설팅 만족도 (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)
C 형	원산지관리 시스템구축	① 기업 규모(전년도 매출액 기준) ② 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(인증수출자 지정 여부) ③ FTA-PASS 입력되는 원재료 수 (BOM上 원재료 수) ④ FTA-PASS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·확인서 발급 및 원산지 판정 ⑤ FTA 컨설팅 만족도 (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)

- (대금지급) 최종 결정금액에서 기업 부담비용을 제외한 대금이 해당 컨설턴트에게 지급

[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(%)]

매출액	20억원 이하	50억원 이하	500억원 이하	1,500억원 이하	1,500억원 초과
부담률	0%	10%	20%	30%	40%

-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이 원칙이나, A형 컨설팅은 1단계 완료 후 1차 대금 지급하고 2단계 완료 후 2차 대금 지급
- 컨설팅 중도포기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 대상업체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컨설턴트가 입증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가능

7. 문의처

- (사업총괄)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사무관(042-481-3215)
- (사업시행)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

세관명	부서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울세관	수출입기업지원센터	02-510-1375	ftaseoul@customs.go.kr

[붙임 1]

YES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					
1. 신청기업 사항					
①기업명		②대표자명			
③사업자등록번호		④업종·업태			
⑤사업장 주소					
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(공정위 최근공고 확인)		☐ 해당 ☐ 해당없음		⑦전년도 매출액	원
				(전년도매출액없는 경우) ⑧상시 근로자수	명
				사업 개시일	
⑨컨설팅 비용부담		최대 400만원(200만원) 중 자부담 ☐ 0% ☐ 10% ☐ 20% ☐ 30% ☐ 40% * 참고 : 매출액 기준(전년도) : 20억원 이하(0%), 50억원이하(10%), 500억원 이하(20%), 1,500억원 이하(30%), 1,500억원 초과(40%)			
⑩FTA활용 여부		☐ 활용(국가 :) ☐ 미활용(활용예정 국가 :)			
⑪정부지자체 등의 FTA 예산컨설팅* 수혜여부		(최근2년 : 2016~2017년도) ☐ 수혜 ☐ 수혜 없음 * 관세청, 산업부, 중기청,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 사업 컨설팅			
⑫주요 수출(거래)품목 (HS6단위)		1.) (HS)		2.) (HS)	
		3.) (HS)			
⑬FTA체결국 수출실적(US\$)		2016년(1-12월)			
		2017년(1-12월)			
		2018년(1-12월)		예상금액 또는 실적금액(계약서 등 증빙)	
⑭매출 형태		☐ 직수출 ☐ 상사수출 ☐ 국내공급(로컬수출) ☐ 국내공급(내수용)			
⑮인증수출자 여부		☐ 업체별(인증번호:) ☐ 품목별(인증번호:) ☐ 없음			
⑯담당자	성명			부서/직위	
	전화번호			휴대전화	
	FAX			e-mail	
2. 희망 컨설팅 유형					
⑰희망 유형		☐ (A형) FTA 활용 수출 지원 ☐ (B형) 사후검증 대응 ☐ (C형) 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) 구축			
3. 지정희망 컨설턴트 *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턴트 기재 (※ '18년도 관세청 YES FTA 컨설턴트 목록은 관세청 FTA포털 및 해당 사업세관 홈페이지에 공지) 예) 000 관세사무소, 000 관세법인					
⑱지정희망 컨설턴트 (타 세관 등록 관세사 지정 가능)	소속				
	주소				
	성명			자격증/등록번호	
	전화번호			e-mail	
	휴대전화			FAX	
관세청 주관 '18년도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,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대표자 : (서명 또는 날인) 관세청장 귀하 직인명판					
※ 첨부서류 : 1. 사업자등록증(사본) 2.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3. 정보활용 동의서 4.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					

[붙임 2]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☐ 목적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·활용

☐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① (이력정보)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
- ② (과세정보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“매출액, 개업일, 휴업기간, 폐업일”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“수출액”에 한함

☐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☐ 동의 효력기간

-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,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
 - *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 소멸
 - *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
 - 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 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기업명 ○○○ (인)

대표자 ○○○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